

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. 1. 15 선고 2019가합102302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용구

피 고 1. 주식회사 B

2. C 유한회사

3. 주식회사 D

변론 종결 2020. 10. 30

판결 선고 2021. 1. 15

주 문

1.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 주식회사 B(이하 '피고 B'라 한다)와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에 관하여 2014. 5. 26. 인천지방법원 2014자33호 재판상화해에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약정을 취소하고, 피고 C 유한회사 < 이하 '피고 C'이라 한다)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8. 2. 14. 접수 제2005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, 피고

주식회사 D(이하 '피고 D'이라 한다)은 E에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. 10. 18. 주식회사 F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 졌다.

나. 주식회사 F은 2007 . 10. 18.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4 . 6. 21.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(이하 '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'라 한다)를 마쳐주었다.

다. 피고 B는 2014. 2. 11. E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4자33호로 모이 위 피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'는 내용의 화해를 구하는 제소 전화해 신청(이하 '이 사건 화해 신청'이라 한다)을 하였고, 2014. 5. 26. 위 내용에 따 른 화해가 이루어져 화해조서(이하 '이 사건 화해조서'라 한다)가 작성되었다, 한편, 위 제소전화해 사건에서 제출된 서면은 위 피고의 2014. 2. 11.자 신청서뿐이다.

라.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2018. 1. 16. 위 화해조서에 기하여 말소되었다.

마. 피고 D은 2018. 1. 29.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6머5358호 조 정조서에 기하여 2016. 3. 11.자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하는 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.

바. 피고 D은 2018. 2. 14.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. 2. 14. 매매 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6, 11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, 이하 같다)의 각 기재,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 주장의 요지

피고 B와 E 사이의 이 사건 화해조서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약정은 사해행위 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, 위 사해행위로 인한 전득자인, 피고 C은 위 피고 명의 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, 피고 D은 E에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3.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직권 판단

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에 관하여 본다.

가. 관련 법리민법 제406조 제2항 후단에 의하면, 채권자취소의 소는 법률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.

위 규정이 정하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기간은 제소기 간이므로 법원은 그 기간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채권자취소의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여야 한다.

따라서 그 기간 준수 여부에 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(대법원 2015. 6. 24. 선고 2015다10134판결 참조).

나. 사해행위의 시기

이 사건에서 원고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법률행위는 이 사건 화해조서 를 통해 이루어진 재판상화해가 아니라 그 화해의 기초가 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약정인 바,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4,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 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, 즉 ① 이 사건 화해 신청은 2014. 2. 11. 이루어진 점, ② 이 사건 화해조서에 첨부된 신청원인에는 피고 B와 E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 정리 에 관하여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는 점, ③ 이 사건 화해 신청 무렵 E이 피고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므로 양자 사이의 합의 과정에 별다른 장애 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, ④ 이 사건 화해조서에는, 2014. 5. 26. 화해기일에 진행 된 절차에 관하여, 양 당사자가 위 조서의 별지로 첨부된 화해조항과 같이 화해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을 뿐인 점, ⑤ 위 화해 사건에서 제출된 서면은 2014. 2. 11. 피 고 B가 제출한 신청서뿐이므로, 위 화해조서에 첨부된 신청원인 및 화해조항은 모두 위 신청서에 첨부된 자료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이 사건 화해조서의 기초가 된 피고 B와 E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

소유권이전등기말소약정은 늦어도 이 사건 화해 신청일인 2014. 2. 11.에는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.

다. 제척기간의 준수 여부

채권자취소의 소에 해당하는 이 사건 소는,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위 소

유권이전등기말소약정이 체결된 2014. 2. 11.경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19. 4.29.

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, 민법 제406조 제2항 후단의 제척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.

라. 소결

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.

4.결 론

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재판장 판사 조영호판사 이준범판사 김용석

별지